

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3. 11. 27.

행정재경위원회

의안 번호	297
----------	-----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11. 3. 강남구청장(주민자치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11. 27.)
“원안가결”

2. 제안설명 요지(행정국장 : 이호현)

가. 제안이유

-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화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비상설화(안 제13조제1항)
-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편중 방지(안 제12조제2항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주민투표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- 합 의 : 기획예산과, 가족정책과, 감사담당관
- 기 타
 - 입법예고 (2023. 9. 27. ~ 2023. 10. 1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 -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-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성별영향분석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(분석평가 완료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조성수)

- 본 일부개정 대상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」는 2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이 조례는 「주민투표법」이 위임한 주민투표 절차 관련 사항을 조례로 입안한 것임.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대상은 제13조(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) 중 제1항 정비와 제2항의 신설이 되겠음.
 - 안 제13조(심의회 구성) 중 제1항은 기존 조문이 “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”는 상설적 규정으로 되어 있으나, 주민투표 청구가 실제 이루어진 사례가 없고 주민투표법 제12조의2¹⁾가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을 조례로 정하고 있어 이를 상설 기구가 아닌 청구에 따라 한시적으로 구성 및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고자 제1항으로 정비하려는 것임.
 - 안 제13조의 제2항 신설은 전체 위원회 관련 조문 내용 중 성별에 따라 위원 위촉사항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보충하고자 신설하는 것임.
- 본 일부개정안은 효율적인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상설화된 심의회를 주민투표 수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 목적이거나, 자칫 법정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.

1) 「주민투표법」 제12조의2(주민투표청구심의회)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 다만,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·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
1.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
2. 제1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
3.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·전자개표의 실시
4.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

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·도의 부시장·부지사, 시·군·구의 부시장·부군수·부구청장(이하 “부단체장”이라 한다)이 된다.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